

감사결과보고서

-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회계분야 특정감사 -
(관서운영경비 편성 및 집행 개선 중심)

2017. 11.



기 상 청
감 사 담 당 관

I. 감사실시 개요	1
1. 감사 배경 및 목적	1
2. 감사 대상 및 범위	1
3. 감사실시 근거	1
4. 감사기간 및 인원	1
5. 감사중점	2
II. 일반 현황	3
1. 관서운영경비 개요	3
2.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 규정	3
3.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4
4.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	5
5. 관서운영경비 주요 운영 기준	7
III. 감사결과	8
1. 총 평	8
2. 문제점 및 처분요구	12
3. 처분요구 총괄표	21
4. 처분요구 일람표	21
5. 처분요구서	22

I 감사 실시 개요

1. 감사 배경 및 목적

- (배경) 2016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
- 평가 결과 업무추진비 집행 분야 평가 점수 저조
※ 위법·부당집행 빈도(5.67점/10점), 규모(7.74점/10점), 경험률(2.37점/10점)
- (목적) 관서운영경비 집행 적정성 중심으로 특정감사를 실시하여 관행적 집행 및 위법·부당한 집행 등 도출된 문제점 개선

2. 감사 대상 및 범위

- 대상 : 본청 및 소속기관 관서운영경비 집행 등 회계분야
- 범위 : 2015회계연도 ~ 2017회계연도 2/4분기

3. 감사 실시 근거

- 기상청 자체감사규정(기상청 훈령 제867호, 2017. 3. 23.)
- 2017년도 자체감사 운영 기본계획(2017. 3. 31.)

4. 감사기간 및 인원

- 감사기간 : 2017. 6. 14.(수) ~ 7. 7.(금)
※ 예비조사(6. 14 ~ 6.23) 및 실지 감사(6. 26 ~ 7. 7.)
- 감사인원 : 감사담당관 등 9명
※ 실지감사 후 기관별 집행실태 비교 분석 및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문제점 조사 (10월)

5. 감사 중점

- 관서운영경비 편성 및 세목조정 등의 적정성
- 정부구매카드 사용 적정성
- 예산의 목적 외 사용 여부
- 불필요한 물품구입 등 예산 낭비 여부
-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 집행 적정성
- 과운영비 집행 적정성
- 여비 정산 적정성
- 소모품 구매 및 관리 적정성
- 지출관련 증거서류 관리 적정성

II 관서운영경비 개요

1. 관서운영경비 개요

- 관서운영경비는 현금지급의 필요성이 있거나 소량·다품종의 구매 또는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지급경비
-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이 교부받아 현금이나 정부 구매카드로 구매·지급
- ※ 관서운영경비는 일반지출과 구분하여 지급원인행위, 지급결의로 처리(국고금 관리법 제24조)

2. 관서운영경비 집행 관련 규정

- 국고금관리법 제24조(관서운영경비의 지급)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31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및 제34조(정부구매 카드의 사용)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기획재정부>
 - 제20조(관서운영경비의 교부 및 지급)
 - 제22조(정부구매카드의 사적사용 및 개인카드 업무상 사용 금지)
 - 제22조2(정부구매카드 사용자의 실명 서명 의무)
- 국고자금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기상청기획조정관>
- 기상청 세출예산 운영 및 집행지침 <기상청 운영지원과>
- 기상청 관서운영경비 범위 지정 <기상청 운영지원과>

3. 관서운영경비의 범위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15. 12. 9. 기획재정부)
- 기상청 관서운영경비 범위 지정 (2017. 2. 9. 운영지원과)

[표 1] 본청 관서운영경비 지정 범위

구 분	목	세 목	관서운영경비 지정 범위
기본 및 주요사업비	110(인건비)	02(기타직보수) 03(상용임금) 04(일용임금)	○ 편성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기본사업비	210(운영비)	01(일반수용비)	○ 편성된 예산 중 기관운영비
		05(특근매식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6(일·숙직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8(유류비)	○ 편성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16(기타운영비)	○ 편성된 예산 중 과운영비
기본 및 주요사업비	210(운영비)	02(공공요금 및 제세)	○ 편성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04(급식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9(시설장비유지비)	○ 건당 500만원 이하 경비 (태풍센터(제주), 슈퍼컴센터(충북)만 해당)
		13(시험연구비)	○ 편성된 예산 일부
기본 및 주요사업비	220(여비)	01(국내여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2(국외업무여비)	○ 편성된 예산 전액
기본 및 주요사업비	240(업무추진비)	01(사업추진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2(관서업무추진비)	○ 편성된 예산 전액
기본사업비	250(직무수행경비)	02(직책수행경비)	○ 편성된 예산 전액
		03(특정업무경비)	○ 편성된 예산 전액
기본 및 주요사업비	320(민간이전)	09(고용부담금)	○ 편성된 예산 전액 또는 일부

[표 2] 소속기관 관서운영경비 지정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기상청(지청)·수치모델링센터·기상기후인재개발원·국가기상위성센터·기상레이더센터·국립기상과학원·항공기상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청에서 지정한 범위를 준수하여 관서운영경비를 운영하여야 함. 단, 기관실정에 맞도록 일부비목(430) 등 변경 적용·시행 가능(운영지원과 사전 협의) ▪ 소속기관장은 기관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시설장비유지비를 관서운영경비로 교부하여 집행 가능
--

4. 관서운영경비 집행 절차

○ 지급 절차



○ 지급방법

- 정부구매카드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카드를 사용하여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

○ 현금지급이 가능한 경비

-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 별지 <제2호>

[표 3]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지급가능경비

예산과목	용도
인건비(110)	현역병사 봉급, 현역병사 특수지근무수당
운영비(210)	일숙직비, 과운영비,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요금
여비(220)	전체
특수활동비(23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단, 수사정보·경호활동 및 대통령행사에 소요되는 경비는 금액 제한없음)로서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할 경비
업무추진비(240)	건당 500만원 이하의 경비로서 해외출장지원경비중 정액경비
직무수행경비(250)	월정직책급, 특정업무경비
보전금(310)	군인사망보상금,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사망일시금, 병사전역급여금, 예비군여비, 상근 예비역 및 공공봉사제 운영여비, 군입영신체검사 불합격자 귀가여비, 군유가족접대비, 포상금 및 상금, 법령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에 대한 일비 등 실비변상금
민간이전(320)	구료비
기타	외국에 있는 채권자가 외국에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경비
	위문금·위로금 등 성격상 불가피하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경비
	제세공과금·법정납부금(각종부담금, 보험료, 기여금) 및 인건비 지급시 공제되는 경비중 현금에 의한 납부가 불가피한 경비
	기타 카드사용 및 계좌이체가 불가능하여 현금사용이 불가피한 경우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운영관서

본청		대구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운영지원과		광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기획조정관	기획재정담당관		목포기상대
예보국	예보정책과	전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국가태풍센터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춘천기상대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대전지방기상청
기후과학국	기후정책과	홍성기상대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정책과	청주기상지청	관측예보과
지진화산센터	지진화산정책과	제주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소속기관		국가기상위성센터	위성기획과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기상레이더센터	레이더기획팀
기상기후인재개발원	교육기획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수도권기상청	기획운영과	항공기상청	기획운영과
	인천기상대		김포공항기상대
부산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제주공항기상대
	안동기상대		무안공항기상대
	울산기상대	울산공항기상대	
	창원기상대	김해공항기상대	

5. 관서운영경비의 주요 운영 기준

- 국고자금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정부구매카드 납부 결제일을 감안하여 월 2회 교부를 원칙으로 함
- 현금지급 억제로 집행의 투명성·효율성 제고
- 계약업무 수행 시 증빙서류 등 관리
 - 승낙사항 첨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일자) 명기 등
- 행정소모품(복사용지, 토너 등) 구매 간소화에 따른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친환경, 장애인 기업, 여성기업,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 정부구매카드 결제 시 사용자 실명 서명
- 업무추진비 집행 관리
 - 건당 50만 원 이상인 경우 참석자 소속·성명자료 첨부

Ⅲ 감사 결과

1. 총 평

기상청은 2016년도 국민권익위 주관 청렴도 평가결과 외부청렴도 3등급, 내부청렴도 5등급으로 종합청렴도가 최하위 등급으로 평가되었다. 주된 사유로 **위법 부당한 업무추진비 집행 등 예산집행관련 문제점**이 있었다.

이번 감사는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한 회계분야 특정감사’**로 본청 및 소속기관의 **관서운영비 집행 분야를 중점으로 감사를 실시하여 관행적 집행 및 위법·부당한 집행 등에 대한 집행사례를 중심으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실태 점검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관서운영경비의 편성, 집행, 정부구매카드 사용 등 6개 분야 세부 점검항목**을 정하고, 대상기관의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4개 팀으로 감사반을 구성하여 실지감사를 하였다.

감사결과 「국고금 관리법」,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 「기상청 세출예산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예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관서운영경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침이나 기준과 다르게 관행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관련 증거서류를 관리하지 않거나, 예산 비목별 사용범위를 벗어나 목적 외로 집행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었다.

가. 세목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비목별 사용범위에 맞게 집행해야 하는데도 특정 세목의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 등으로 세목조정, 전용 등 정당**

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사용하는 사례가 있었다.

시험연구비(210-13목)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10개 세목에 대한 경비 집행에만 사용하고, 사업추진비(240-01목)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성격의 회의비 등의 경비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태풍센터 등에서는 연구업무 추진에 필요하다는 사유로 시험연구비 일부를 회의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따라서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는 별도의 예산비목으로 계상하거나 세목조정 또는 전용 절차 등을 통하여 예산비목의 성격에 맞게 집행함으로써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나. 예산집행지침 이행 부적절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할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에 따라 집행해야 하는데도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최고금액을 넘어서는 집행하거나 과운영비를 관용차량 세차, 주유비, 회비 등 기준에 맞지 않게 집행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과운영비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집행내역을 매월 부서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했는데도 공개하지 않거나 집행 근거자료를 관리하지 않는 등의 문제점도 있었다.

또한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 구입은 유류구입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키드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해야 하는데도 다량의 유류를 선결제로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있어 개선이 요구된다.

다. 관서운영경비 지급 증거자료 관리 미흡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 6. 30.) 제31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수증,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및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로 관리해야 하고,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에 따라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한다.

그런데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지급 건은 지급계산서에 검수조서, 실명으로 서명한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 등으로 회의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하는데도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다.

라. 기관장 및 부서장 통신비 지원에 대한 근거 부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기준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통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도별 세출예산서에도 통신비 지원에 관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음.

그런데 기관장 및 부서장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사유로 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지급하고 있었다.

따라서 개인 명의의 휴대폰에 대한 통신비 지원은 법적 근거를 검토하여 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하고, 방재기상업무, 기상홍보 업무 등을 위한 휴대폰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대상 및 범위 등 근거를 명확히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 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문제점에 대해 감사담당관실에서는 운영지원과, 기획재정담당관실의 예산편성, 결산, 집행 담당자와 본청 각국의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의견을 듣는 등 개선방안 마련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리고 관서운영경비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집행 및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관서운영경비 집행 개선 방안

- 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통보 시 관서운영경비 집행 부적정 집행 사례에 대한 세부 집행 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기획재정담당관)
 - 회계연도 결산보고서 시정요구 및 대내외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적정 집행 기준 등
 - 예산편성, 전용, 세목조정 등에 대한 절차 안내
- ② 「기상청 세출예산 운영 및 집행지침」 통보 시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준수사항 등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집행 관리를 강화 (운영지원과)
 -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 대상 관련 법, 규정, 지침에 대한 교육 실시
 - 관서운영경비 지정 범위 세분화 검토
- ③ 관서운영경비 집행에 대한 상시 감사체계 운영 (감사담당관)
 - 관서운영경비 지급대장 모니터링 및 종합감사, 복무감사 시 실태 점검

2. 문제점 및 처분요구

①

관서운영경비 세목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비목별 사용범위에 맞게 집행해야 함.
- ◀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의 추진을 위한 다과비 및 식사비용은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일반수용비(210-01목) 또는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
-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워크숍·회의 참석, 교육 참석 등을 위한 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
- ◀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물품 등의 구입은 자산취득비(430-01목)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사무용 책상, 침대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210-01목)로 집행
- ◀ 시설물 관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목)나 시설장비유지비(210-09)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소방시설 점검 위탁대행료 등 시설유지보수 비용 등을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예산 과목별 집행 범위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세목조정, 전용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 책임성 제고 (통보)

[관련 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②

관서운영경비 지급기준(최고금액) 이행 부적정

예보국
관측기반국
국립기상과학원

【 문제점 】

-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을 건당 500만 원으로** 정하고 있음.
- ◀ 예보국에서는 책자인쇄비 7,810,000원('16. 12), 국립기상과학원은 워크숍 개최 관련 만찬비, 오찬비 8,889,600원('16. 6.),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청원경찰근무복 구입비 6,045,600원('17. 4), 5,118,300원('16. 6.)를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하여 관련 규정 위반**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관서운영경비의 건당 **최고금액을 넘어서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통보)**

[관련 부서] 예보국 예보정책과, 관측기반국 국가슈퍼컴퓨터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③

기타운영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①비서실 및 과 운영비는 다과, 음료 등 소규모로 소요되는 운영비로 **직원 식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② 축조의금은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게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③ 격려금은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음**.
- ◀ 국가태풍센터는 과 운영비를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비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직원 식대 지원, 관용차량 세차 및 주유비, 지역 기관장 모임 회비 납부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
- ◀ 부산지방기상청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비서실 운영비 총 20,944천 원을 집행하면서 지역 유관기관장 모임 등에 소요되는 기관장 활동비 1,271천 원, 직원 식사비용 2,335천 원, 상품권 구입 1,016천 원 등 기관장 부속실 운영경비와 관계없는 타 목적 경비로 6,895천 원을 집행하였고, 7,036천 원은 **집행 내역을 관리하지 않음**

- 과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1일에 현원을 산정하여 6인 이상 부서에는 180천원, 5인 이하 부서에는 90천원을 과운영비로 지급해야 함.

- ◀ 국가태풍센터는 과운영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데도 과운영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2개월분 이상을 일괄 지급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5회 있었음**.

- ◀ 기타운영비 중 비서실 운영비와 관련하여 본청(실·국)은 150천 원에서 180천 원, 1차 소속기관(지방청 단위)은 150천 원에서 500천 원까지, 2차 소속기관(지청)은 200천 원에서 250천 원, 기상대는 125천 원에서 208천 원까지 편성하는 등 **기관의 특성과 인원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없이 편성하여 지급**

-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운영비 집행내역을 매월 부서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과운영비 집행내역 자료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과운영비 집행 증빙서류를 적절하게 관리해야 함**.

- ◀ 관측기반국, 기후과학국, 부산지방기상청 등에서는 과운영비 집행관련 내역 및 증빙 자료를 정리하고 있지 않거나, **부서원에게 사용내역을 공개하지 않는 등 과운영비 및 비서실 운영비가 투명하게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기타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을 방지하고, 비서실 운영비의 형평성 있는 편성 및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등 기타운영경비의 투명한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④

관서운영경비 지급 증거서류 관리 부적정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 6. 30.) 제31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수증,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및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함.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5 정부구매카드 사용원칙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해야 함.
- ◀ 다수의 부서에서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하면서 일부 지급 건에 대하여 **지급계산서에 검수조서, 실명으로 서명한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음.**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관서운영경비 지급과 관련하여 「계산증명규칙」,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관련업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교육 실시 (통보)**

[관련 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⑤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III.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①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②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③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④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1인(식)에 6,000원 이내로 지급 함.
- ◀ 일부기관에서 특근매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초과근무시간이 2시간 미만으로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직원에게도 특근매식비를 지급 (7개 부서 30건/ 2015.1 ~2017. 5)
- ◀ 국가태풍센터는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 실적 대비 특근매식비 374식 2,240,000원을 과소 지급**

- ◀ 국가태풍센터는 청사와 인접한 식당이 없어(도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 특근매식비를 당일 특근한 직원에 대한 식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관 행사 또는 특정일에 합하여 사용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앞으로 특근매식비 집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시행**하고 **관련 교육 실시 (통보)**

[관련 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⑥

관용차량용 유류구매 부적정

예보국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 문제점 】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
- 운영지원과에서도 매년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문서를 통해 할인을, 캐시백 이용방법 등을 공지
-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해 유류를 구매할 때에는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결제한 후 사용하는 것이 타당
- ◀ 국가태풍센터는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구매 시 청사인근에 주유소가 없다는 이유로 10회에 걸쳐 6,383ℓ, 8,589,210원의 유류를 선 결제로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주유하여 사용
- ◀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3회에 걸쳐 443,940원의 유류를 선 결제로 구매한 후 사용
- ◀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에서도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 유류를 구매 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7,652,070원의 유류를 선 결제하여 사용
- ◀ 강원지방기상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총 656회에 걸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일반 기관운영경비 카드를 이용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필요에 따라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시행 (통보)

[관련 부서]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

⑦

기관장 및 부서장 통신비 지급에 관한 사항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기준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통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연도별 세출예산서에도 통신비 지원에 관한 세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음.
- 따라서 고위직 공무원이 사용하는 보안휴대폰 요금 이외의 **개인용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없음.**
 - ◀ 본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에서는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기관장 및 부서장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사유로 개인 명의의 통신비를 지원**
 - ◀ 개인명의 휴대폰임에도 통화요금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제외한 통화요금을 지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방재기상업무, 기상홍보 업무 등을 위한 휴대폰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근거를 명확히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시행 (통보)

[관련 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⑧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 등으로 회의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해야 함.**
-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음.
 - ◀ 예보국, 기상레이더센터, 국가태풍센터 등에서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사용 계획을 수립하지 않거나, 결과보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되었고, 확인조서로 증빙자료를 같음하고 있었음.**
 - ◀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국가태풍센터에서 2015. 1. 1. ~2017. 5. 30.까지 회의비로 50만 원 이상 집행한 4건에 대해서 참석자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누락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시고, 유사 사례가 재발 되지 않도록 개선 방안 마련·시행하고 교육 실시 (통보)

[관련 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문제점 】

-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집행지침 V.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 등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 따라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사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 여비(220-01), 임차료(210-07), 업무추진비(240-02) 등으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해야 함.
- ◀ 관측기반국에서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 정보지식인대회 중앙대회 참가자 특별교육', '정보통신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등과 관련하여 시험연구비를 **회의비, 여비 등으로 집행 (당시 기상서비스진흥국 소관)**
- ◀ 국가태풍센터에서는 '국가태풍센터운영' 및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R&D)사업 추진을 위해 시험연구비(210-13목)를 집행하면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창조정책과정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청원경찰 안보현장 답사' 여비, '세계보안엑스포 참가' 여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
- ◀ 수치모델링센터에서는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210-13목)를 집행하면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경조사 조문' 여비 및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시험연구비 예산을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험연구비 집행 업무 철저를 위한 교육 실시 (통보)**

[관련 부서]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관측기반국 관측정책과,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 문제점 】

-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국내자동차

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운임 대신에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 내부기준(운영지원과-1421, 2008. 7. 23.)에 따라 **사전에 자가용 이용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한 후 여비 지급요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함.**

- ◀ 수치모델링센터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근무지의 출장 시 사전에 **내부 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자에게 연료비, 통행료 등 총 555,560원(5회) 여비를 집행**

【 처분요구/ 개선방안 】

- 근무지의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사전 내부결재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연료비, 통행료 등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여비 집행 업무 철저 (통보)**

[관련 부서]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

3. 처분요구 총괄표

구분	경고	주의	시정	개선	통보	현지시정	계	모범사례
처분요구 (건수)	-	-	-	-	10	-	10	-

4. 처분요구 일람표

순번	감사대상기관 (관계기관/부서)	건명	처분요구		
			처분종류	재정상조치(원)	조치구분
1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관서운영경비 세목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통보	-	행정
2	예보국 관측기반국 국립기상과학원	관서운영경비 지급기준(최고 금액) 이행 부적정	통보	-	행정
3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기타운영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통보	-	행정
4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관서운영경비 지급 증거서류 관리 부적정	통보	-	행정
5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통보	-	행정
6	예보국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공용차량용 유류구매방법 부적정	통보	-	행정
7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기관장 및 부서장 통신비 지급에 관한 사항	통보	-	행정
8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통보	-	행정
9	예보국 기상서비스진흥국 수처리모델링센터	시험연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통보	-	행정
10	수처리모델링센터	여비집행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통보	-	행정

5. 처분 요구서

통보					
번호	1	소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제 목 : 관서운영경비 세목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 업무 개요					
<p>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지출 관에게 관서운영경비를 월별로 교부받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이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p> <p>「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는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정하고 있으며, 운영지원과는 「기상청 관서운영경비 범위」를 정하여 본청 및 소속기관 관서운영경비 집행부서에 시행하여 해당 범위 내에서 집행하도록 하고 있다.</p>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p>「국가재정법」 제4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에 따르면 세출예산은 정한 목적 외의 경비로 사용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예산 비목별 적용범위에 맞게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p>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일반수용비(210-01목), 기타운영경비(210-16목) 집행 부적정					
<p>「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공식회의 및 행사 경비, 연회비 및 제경비,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기관의 공식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하여야 한다.</p> <p>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에 점검한 기후과학국 등 5개 기관에서는 회의 및</p>					

행사 목적의 다과를 구입하거나 회의 목적의 직원 식사비용 등 업무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는 업무추진비(240목)로 집행해야 하는데도 일반수용비(210-01목), 기타운영비(210-16목)로 집행하였다.

[표 1]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사례

목적	기관명	건수	집행액(원)	지급한 예산과목	적정 지급과목
회의, 행사 목적의 다과구입	기후과학국	34	4,806,900	일반수용비(210-01)	업무추진비(240-02)
	광주지방기상청	15	1,426,440	일반수용비(210-01)	업무추진비(240-02)
	강원지방기상청	3	1,856,920	일반수용비(210-01)	업무추진비(240-02)
	항공기상청	6	608,040	일반수용비(210-01)	업무추진비(240-02)
	전주기상지청	33	2,802,190	일반수용비(210-01)	업무추진비(240-02)
	계	91	11,500,490	-	-
회의 목적의 내부직원 오찬만찬	광주지방기상청	26	6,148,700	기타운영비(210-16)	업무추진비(240-02)
	항공기상청	2	493,060	기타운영비(210-16)	업무추진비(240-02)
	전주기상지청	12	3,623,000	기타운영비(210-16)	업무추진비(240-02)
	계	40	10,264,760	-	-

나.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국내출장여비는 국내여비(220-01목)로 집행하여야 하고, 기상관측장비 및 통신장비 등 장비유지를 위한 직접적인 점검(감독)업무 수행을 위한 여비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에 조사한 광주지방기상청 등 3개 기관에서는 통신 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를 위한 업무와 관련이 없는 워크숍·회의 참석, 교육 참석 등에 소요되는 여비를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로 집행하였다.

[표 2] 일반수용비, 기타운영비 집행 부적정 사례

목적	기관명	건수	집행액(원)	지급한 예산과목	적정 지급과목
워크숍, 회의 참석, 교육 등 목적의 업무 관련 여비	광주지방기상청	9	1,464,9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국내여비(220-01)
	전주기상지청	45	2,797,020	시설장비유지비(210-09)	국내여비(220-01)
	청주기상지청	2	359,000	시설장비유지비(210-09)	국내여비(220-01)
	계	56	4,620,940	-	-

다. 일반수용비(210-01목)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물품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재물조사 대상이 되는 공구·기구·비품, 기타물품 구입비 및 사무용 집기류의 구입비는 자산취득비(430-01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에 조사한 강원지방기상청 등에서는 청소도구함, 사무용 책상, 침대 등 물품을 구입하면서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였다.

[표 3] 일반수용비 집행 부적정 사례

목적	기관명	건수	집행액(원)	지급한 예산과목	적정 지급과목
청소도구함, 조립식 창고, 회의 탁자 구매	강원지방기상청	3	3,659,950	일반수용비(210-01)	자산취득비(430-01)
침대구입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1	510,000	일반수용비(210-01)	자산취득비(430-01)
사무용책상 구입	국가태풍센터	1	1,235,000	일반수용비(210-01)	자산취득비(430-01)
벽시계 구매	춘천기상대	1	498,000	일반수용비(210-01)	자산취득비(430-01)

라. 용역비 등 기타 예산 집행 부적정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시설물 관리 등 유지보수를 위한 용역비용은 관리용역비(210-15목)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광주지방기상청에서는 소방시설 점검 위탁대행료(2017년 1월~5월)를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였고, 강원지방기상청에서는 임차관사 내부수선, 청사보

안 CCTV 설치공사 등 시설유지보수 비용을 소규모 용역비로 간주하여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였다.

그리고 항공기상청에서는 행사 및 포상금 용도의 상품권구입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기타운영비(210-16목)에서 집행하였고, 대전기상지청에서는 사무용복합기 등 사무기기 임차비용은 임차료(210-07목)에서 집행해야하나 일반수용비(210-01목) 또는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집행하였다.

또한 대전지방기상청, 춘천기상대에서는 비상용 발전기 및 청·관사 난방용 유류를 구입하면서 연료비(210-08목)로 집행해야 하나 일반수용비(210-01목),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으로 집행하였다.

[표 4] 기타 예산편성 목적 외 집행 사례

목적	기관명	건수	집행액(원)	지급한 예산과목	적정 지급과목
소방시설 위탁대행료 (2017. 1.~5.)	광주지방기상청	5	935,000	일반수용비 (210-01)	관리용역비 (210-15)
임차관사 내부수선, CCTV 설치공사 등 (2016)	강원지방기상청	3	6,031,000	일반수용비 (210-01)	시설장비유지비 (210-09)
행사, 포상금 목적 상품권 구매 (2015~2017)	항공기상청	8	7,070,000	기타운영비 (210-16)	일반수용비 (210-01)
사무용기기 임차료 (2015~2017)	전주기상지청	33	7,222,030	일반수용비 (210-01)	임차료 (210-07)
비상발전기, 청사 난방용 유류비 (2016)	대전지방기상청	2	134,250	일반수용비 (210-01)	연료비 (210-08)
청사난방 유류비 (2016)	춘천기상대	2	2,000,000	시설장비유지비 (210-09)	연료비 (210-08)

위와 같은 사례 외에도 프린터토너, 상비약, 주방세제 등 소모성 물품구입비는 일반수용비(210-01목)에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재료비(210-11목), 기타운영비(210-16목) 등으로 예산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편의적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또한 시험연구비(210-13목)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10개 세목에 대한 경비 집행에만 사용하고, 사업추진비(240-01목)이나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성격의 회의비 등의 경비로 집행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데 국립기상과학원, 국가기상위성센터, 기상레이더센터, 국가태풍센터 등 기관에서는 연구업무 추진과 관련하여 시험연구비 일부를 회의비, 간담회비 등으로 집행하고 있었다.

4. 관계기관 의견

각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확인서에서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고 개선하겠다는 의견제시와 함께, 본청 각 국실에서 사업비를 지방청 등 소속기관으로 재배정 시 사업관련 소요 경비 등 비목별 필요한 예산항목을 포함하여 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및 각 소속기관 장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해 과목별 적용범위에 부합하지 않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예산이 부족할 경우에는 예산의 전용, 세목조정 등 정당한 절차를 거쳐 예산의 목적 외 사용이 없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시행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등 건전한 국가재정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 부서

통 보

번호	2	소 관	예보국 관측기반국 국립기상과학원	관련부서	예보정책과 관측기반국 연구기획운영과
----	---	-----	-------------------------	------	---------------------------

제 목 : 관서운영경비 지급(최고 금액) 기준 이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월별로 교부 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에 대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 제52조 제1항에 의하면 동 조항에 규정된 예외적인 항목이 아닌 경우에는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의 최고금액은 건당 500만원으로 정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예보국에서는 책자 인쇄비 7,810,000원(2016. 12. 28.), 국립기상과학원은 워크숍 개최와 관련 만찬비, 오찬비 8,889,600원('16. 6. 27.)을, 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는 청원경찰근무복 구입비를 2회에 걸쳐 6,045,600원('17. 4. 20.)과 5,118,300원('16. 6. 28.)을 집행하는 등 관련법령에서 정한 관서운영경비로 지급할 수 있는 건 당 최고금액 기준인 500만 원 범위를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련 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예보국장, 관측기반국장, 국립기상과학원장은

관서운영경비 집행 시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에 정한 관서운영경비의 범위를 넘어서는 집행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예보국 예보정책과, 관측기반국 국가슈퍼컴퓨터센터, 국립기상과학원 연구기획운영과

통 보

번호 3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제 목 : 기타운영비 편성 및 집행 부적정

1. 업무 개요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본경비 내 기타운영비(210-16목)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라 필요한 예산을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교부받아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 표 1 】 2015년도 ~ 2017년도 기타운영비 예산 현황

(단위 : 천 원)

기관명	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계	1,978,476	701,318	649,482	619,507
기상청(본청)	952,000	348,000	324,000	280,000
수도권(청)	82,797	24,157	28,920	29,720
부산(청)	140,565	56,330	42,440	35,940
대구(지청)	46,049	8,169	20,540	17,340
광주(청)	123,692	53,421	29,151	41,120
전주(지청)	52,177	10,790	20,687	20,700
대전(청)	82,995	37,575	20,968	24,452
청주(지청)	31,439	7,350	12,026	12,063
강원(청)	124,780	46,346	38,060	38,060
제주(청)	77,212	25,960	23,240	28,012
항공(청)	107,080	34,040	36,200	36,840
국립기상과학원	91,990	28,000	32,070	31,920
국가기상위성센터	29,700	9,180	9,180	11,340
기상레이더센터	36,000	12,000	12,000	12,000

※ 각 기관별 제출자료 재구성(*2017년도 신설 기관(기상기후인재개발원, 수치모델링센터는 제외))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기타운영비는 ①비서실 및 과 운영비는 다과, 음료 등 소규모로 소요되는 운영비로 직원 식대, 회식비 등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② 축조의금은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게 축·조의에 소요되는 경비로 집행하여야 하고, ③ 격려금은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우수 부서 및 직원 등에 대한 격려금으로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용으로 사용할 수 없다.

또한,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36조에 따르면 관서운영경비 지급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거나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 및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20조에 따르면 운영비 과목은 일숙직비, 과운영비, 소속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금에 한하여 현금지급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 또한 관서운영경비 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비에 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불가피한 경우 외에는 현금으로 지급해서는 아니 된다.

그리고 「국고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출납의 증명이 되는 증거서류의 작성 및 보관은 계산증명규칙을 준용하는 등 예산 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기상청은 2012년도부터 「반부패·청렴정책」 및 「공직복무관리」 일환으로 잘못된 관행을 개선하고 예산집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과 운영비’ 및 ‘기상대급 기관운영비’ 집행내역을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비서실 운영비 예산편성 부적정

비서실 운영비 편성에 있어 기관의 지역적 및 업무 특성, 근무인원 등을 고려하여 형평성에 적합하도록 기준에 따라 편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2015년도에서 2017년도까지 본청의 각 실·국, 소속기관의 비서실 운영비 편성 현황을 조사한 결과 본청(실·국)은 150천 원에서 180천 원, 1차 소속기관(지방청 단위)은 150천 원에서 500천 원까지, 2차 소속기관(지청)은 200천 원에서 250천 원, 기상대는 125천 원에서 208천 원까지 편성하는 등 기관의 특성과 인원 등을 고려한 별도의 기준 없이 편성하고 있었다.

【표 2】 2015년도 ~ 2017년도 비서실 운영비 예산 편성현황

(단위 : 천 원)

기관	구분	2015년도	2016년도	2017년도	비 고
		단가/월	단가/월	단가/월	
본청	실·국(기획조정관)	180	180	180	
	실·국(타국)	150	150	150	
수도권(청)	지방청장실	-	250	250	
	기상대	-	208	167	
부산(청)	지방청장실	250	250	250	
	대구 지청	15.7월 이후	-	250	250
		15.6월 이전	208	-	-
	기상대	167	167	167	
광주(청)	지방청장실	456	450	450	
	전주 지청	15.7월 이후	-	200	200
		15.6월 이전	208	-	-
	기상대	167	100	100	
강원(청)	지방청장실	250	250	250	
	기상대(춘천)	208	167	167	
	기상대(춘천 이외)	167	-	-	
대전(청)	지방청장실	220	220	350	
	청주 지청	15.7월 이후	-	208	200
		15.6월 이전	208	-	-
	기상대	167	125	125	
제주(청)	지방청장실	150	300	500	
	기상대	150	-	-	
항공(청)	항공청장실	150	150	150	
	기상대	100	100	100	
과학원	원장실	370	270	265	
레이더(센)	센터장실	180	180	180	
위성(센)	센터장실	150	150	150	
수치(센)	센터장실	-	150	150	

※ 기획재정담당관실 제출자료 재구성

그 결과 비서실 운영비가 각 기관(부서) 간 형평성에 부합하지 않게 집행될 우려가 있다.

나. 비서실 운영비 및 과운영비 집행 부적정

1) 과 운영비 지급 부적정 및 목적 외 사용

기타운영비 중 과운영비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매월 1일을 현원산정일을 원칙으로 6인 이상 부서에 180천원, 5인 이하 부서에 90천원을 과운영비로 지급하고 있다.

따라서 과운영비는 매월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비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가태풍센터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과운영비를 매월 지급하지 않고 2개월분 이상을 일괄 지급한 사례가 2015년부터 2016년까지 2년간 5회 있었다.

【표 4】 국가태풍센터 과운영비 2개월분 이상 일괄지급 현황(2015~2016년도)

(단위 : 원)

지급일	지급내역	지급액
2015. 4. 23.	2015년 4월, 5월 과운영비	360,000
2015. 9. 1.	2015년 8월, 9월 과운영비	360,000
2016. 4. 25.	2016년 1월, 2월, 3월, 4월 과비	720,000
2016. 7. 12.	2016년 6월, 7월 과비	360,000
2016. 10. 4.	2016년 9월, 10월 과비	360,000

그리고 과운영비는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경비에 사용해야 하는데도 직원 식대 지원, 관용차량 세차, 관용차 주유비, 지역 기관장 모임 회비(한남리 일출회) 납부 등 목적과 다르게 집행하였다.

【표 5】 국가태풍센터 과운영비 목적 외 사용 현황(2015~2016년도)

(단위 : 원)

지급 목적	사용 내역	사용 금액
직원 식대 지원	식대 4건	523,000
지역 모임 참여(회비 등)	회비, 경로지원 등 6건	680,000
관용차 세차	관용차 세차 등 9건	1,828,950
관용차 주유	관용차 주유 3건	70,000
계		3,101,950

비서실 운영비의 목적 외 사용과 관련하여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은 2015년부터 2017년 4월까지 비서실 운영비 총 20,944천 원을 집행하면서 지역 유관기관장 모임 등에 소요되는 기관장 활동비 1,271천 원, 직원 식대비 2,335천 원, 상품권 구입 1,016천 원 등 기관장 부속실 운영경비와 관계없는 타 목적 경비로 6,895천 원을 집행하였고,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로 7,036천 원을 집행하였다.

[표 6] 2015년도~2017년 4월까지 부산(청) 및 그 소속기관 비서실 운영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구 분	계	부산(청)	안동(기)	창원(기)	울산(기)
계 (A+B+C)	20,944,000	7,000,000	4,648,000	4,648,000	4,648,000
적정 집행액(A) (비서실 운영 물품 등 구입비)	7,012,400	2,101,500	1,253,100	2,424,740	1,233,060
타 목적 집행액(B)	6,895,370	1,556,500	1,277,500	1,899,920	2,161,450
기관장 활동비	1,271,200	900,000	-	371,200	-
식대(소속직원 등)	2,334,860	-	1,277,500	219,000	838,360
직원격려 상품권 등 구입	1,015,720	-	-	-	1,015,720
기 타	2,273,590	656,500	-	1,309,720	307,370
미 인지 집행액(C)	7,036,230	3,342,000	2,117,400	323,340	1,253,490

* 부산지방기상청 및 그 소속기관 제출자료 재구성

2) 비서실(과)운영비 집행내역의 투명성 필요

기상청은 2012년부터 예산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과 운영비를 매월 부서 소속 직원에게 집행내역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각 부서는

과운영비 집행내역 자료에 대해 투명성과 책임성이 확보되도록 「계산증명 규칙」에 따라 과 운영비 집행 증빙서류를 적정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런데 이번 감사기간 중 과운영비 집행 및 관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가) 관측기반국

관측기반국 계측기술과는 집행관련 증빙자료를 정리하지 않고 내역만을 기록하고 있었고 과운영비를 개인통장에 관리하고 있었다.

그리고 관측정책과, 계측기술과, 정보통신기술과는 과운영비 집행내역을 부서원들에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나) 기후과학국

기후과학국의 경우 이상기후팀, 기후변화감시과는 2017년도 현재 지출관련 증빙서류를 보관하고, 부서원에게 내역을 공개(기후변화감시과 연1회 일괄 공개)하는 등 과운영비 사용의 투명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그런데 기후정책과, 기후예측과, 해양기상과는 과운영비 사용내역은 작성하고 있지만 월별 사용내역을 부서원에게 공람하지 않고 있었고, 지출관련 증빙자료도 보관하지 않았다.

다) 부산지방기상청

부산지방기상청은 비서실 운영비를 매월 250천 원씩 현금으로 기획운영과에 지급 후 사용하면서 2015년 7월부터 증빙자료 비치 및 집행내역을 기록하다가 2015년 12월 이후 운영비 집행에 대한 증빙자료가 없이 집행내역을 기록하고 있었고, 2016년도 7월부터는 집행내역에 기록 및 증빙자료 없이 집행내역을 알 수 없는 상태로 비서실 운영비를 관리하고 있었다.

그 결과 과운영비 및 비서실 운영비가 투명하게 사용 관리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4. 관계기관 의견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향후 기관, 부서의 운영비 집행에 있어 청 차원에서 구체적 집행기준을 마련에 대한 필요성을 제시하였으며,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는 2018년도 기상청 기본경비의 기타운영비(비서실 운영비)를 형평성 있게 편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실·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비서실운영비 및 과운영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계산증명규칙」(감사원)등에서 정한 예산집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목적 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하고, 비서실 운영비를 형평성있게 편성하고 과 운영비 집행내역을 소속 직원에게 공개하는 등 기타운영경비의 투명한 집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통 보

번호	4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	-----	-----------	------	---------------

제 목 : 관서운영경비 지급 증거자료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국고금 관리법」 제24조에 따라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출관으로부터 관서운영경비를 월별로 교부받아 수시로 발생하는 지급수요에 대한 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계산증명규칙」(감사원규칙 제289호, 2016. 6. 30.) 제31조에 따르면 관서 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관서운영경비출납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같은 규칙 제27조에 따라 출납계산서에는 지출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영수증, 견적서 및 청구서, 계약서, 검사조서 및 기타 지출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5 정부구매카드 사용원칙에 따르면 정부구매카드는 「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기획재정부)」에 따라 사적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카드사용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서명토록 하고 있다.

또한, 「국고금관리법」 제4조에 따르면 국고금의 수입 및 지출 등과 관련된 사항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기록·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등 예산 집행·관리에 있어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이번 감사기관 중 대상기관 별로 조사한 결과 관서운영경비를 지급

하면서 일부 지급 건에 대하여 지급계산서에 검수조서, 실명으로 서명한 정부구매카드 영수증 등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지 않았다.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 등 9개 기관에서는 정부구매카드 영수증에 사용자가 실명으로 서명을 하지 않거나 부서명을 기재하였고,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등 6개 기관은 업무추진비를 지급함에 있어서 내부결재 등 근거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사례가 다수 발견 되었다.

[표 1] 관서운영경비 지급증거서류 미비 현황

미비 사항	부서	비고
검사(검수)조서 미첨부	예보국(국가태풍센터),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광주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전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청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운영과)	'15년~'17년 상반기 지급 건 중 일부만 해당됨
정부구매카드 실명서명 미실시	기획조정관실(기획재정담당관실), 예보국(예보정책과, 국가태풍센터),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기상서비스진흥국(기상서비스정책과), 광주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전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청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운영과)	"
업무추진비 근거서류 미첨부	관측기반국(국가기상슈퍼컴퓨터센터), 광주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전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대전지방기상청(기획운영과), 청주기상지청(관측예보과) 국립기상과학원(연구기획운영과)	"

위와 같이 관서운영경비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자료를 정확하게 처리하지 않은 것은 예산 집행·관리의 투명성을 저해하는 원인 될 수 있다.

4. 관계기관 의견

감사기간 중 관련부서에서는 향후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경우 「계산증명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라 지급 증빙서류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서운영경비를 지급할 경우 「계산증명규칙」,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국고금 관리법」에 따라 지급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정확하게 첨부하도록 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시행하고, 교육을 실시하여 관련업무가 철저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통 보					
번호	5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제 목 : 특근매식비 집행 부적정					
<p>1. 업무 개요</p> <p>본청 각 국실 및 소속기관에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5 특근매식비에 정한 기준에 따라 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에게 편성된 예산범위 내에서 6,000원/식인 이내로 지급하고 있다.</p> <p>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p> <p>「201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Ⅲ. '비목별 지침'에 따르면 특근매식비는 ①정규근무시간 개시 2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는 자 ②근무종료 후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③ 휴일에 2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④유연근무를 실시하는 경우 근무개시 전·후 2시간 근무하는 자에게 예산범위 내에서 1인(식)에 6,000원 이내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p> <p>그리고 「국가재정법」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규정에 따라 특근매식비는 특근을 한 자에 대한 식비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한다.</p> <p>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p> <p>그런데 연구개발담당관실 등 7개 부서는 소속 직원에 대한 특근매식비를 지급함에 있어 특근매식비 지급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30명 직원에게도 특근매식비를 지급하여 총 180,000원의 특근매식비를 과오 집행하였다.</p>					

소속	성명	초과근무 일자	요일	출근시간	퇴근시간	비고
연구개발담당관실	김○○	20151015	목	7:37	18:00	
	김○○	20151019	월	7:15	18:00	
	김○○	20151022	목	9:00	19:32	
	김○○	20151026	월	7:28	18:00	
	김○○	20151007	수	7:18	19:01	
	김○○	20151019	월	7:40	18:00	
	소계	6건				
창조행정담당관실	김○○	20151001	목	7:14	18:52	
	김○○	20151020	화	7:20	18:43	
	소계	2건				
국제협력담당관실	이○○	20151029	목	09:00	19:50	
	도○○	20151012	월	09:00	19:46	
	소계	2건				
기상서비스정책과	김○○	20150109	월	09:29	20:09	시차출퇴근
	김○○	20150126	월	09:21	20:12	"
	조○○	20150223	월	09:00	19:49	
	정○○	20150224	화	07:57	19:46	
	정○○	20150227	금	09:00	19:35	
	김○○	20150221	토	-	-	
	김○○	20150222	일	-	-	
	한○○	20150527	금	09:00	19:50	
	전○○	20150204	수	09:00	19:40	
	소계	9건				
국가데이터센터	김○○	20160801	월	07:25	19:43	
	이○○	20160802	화	07:54	19:55	
	이○○	20160808	월	07:29	19:32	
	이○○	20160816	화	07:44	19:45	
	이○○	20160829	월	07:34	19:49	
	소계	5건				
인력개발과	이 ○	20160803	수	09:00	19:55	
	소계	1건				
지진화산정책과	김○○	20170404	화	07:22	19:05	
	김○○	20170406	목	07:14	19:07	
	김○○	20170410	월	07:25	18:38	
	김○○	20170411	화	07:25	18:45	
	김○○	20170418	화	07:22	18:33	
	소계	5건				
7개 부서	총계	30건	6,000원×30건=180,000원			

그리고 국가태풍센터 관서운영경비 출납공무원은 예보국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에게 소요경비를 예상하여 적정예산을 요구하고 특근매식비를 교부받아 집행하여야 한다.

그런데 예보국은 예산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특근매식비 초과근무에 따른 특근 실적 대비 374식 2,240,000원을 과소 지급하였다.

[표 2] 특근 실적 및 특근매식비 지급 현황

(단위 : 원)

연도	실적		집행		차이(과소 지급)	
	식	금액	식	금액	식	금액
2015	557	3,342,000	391	2,350,000	166	992,000
2016	610	3,660,000	550	3,300,000	60	360,000
2017	298	1,788,000	150	900,000	148	888,000
계	1,465	8,790,000	1,091	6,550,000	374	2,240,000

그리고 국가태풍센터는 청사와 인접한 식당이 없어(도보, 대중교통으로 이동이 불가) 특근매식비를 당일 특근한 직원에 대한 식비로 사용하지 못하고, 기관 행사 또는 특정일에 합하여 사용하는 사례도 있었다.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련 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앞으로 특근매식비를 집행과 관련하여 지급 대상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과대 또는 과소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방안을 마련하고, 특근매식비는 특근을 한 자에 대한 식비로 정당하게 사용되도록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통보)

통 보

번호	6	소 관	예보국 강원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관련부서	국가태풍센터 기획운영과 연구기획운영과 무안공항기상대
----	---	-----	------------------------------------	------	---------------------------------------

제 목 : 공용차량 유류구매 사용 부적정

1. 업무 개요

예보국 국가태풍센터에서는 태풍예보 및 고층기상관측 업무 등 기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총 3대의 관용차량을 운용하고 있으며, 국립기상과학원 및 강원지방기상청,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 등에서도 유관기관 방재기상업무 협의 및 관할 무인관측소의 점검 등 기상업무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수행을 목적으로 관용차량을 운용·관리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르면 ‘중앙관서 및 공공기관은 유류 구입 시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활용하여 조달청에 등록된 주유소에서 구매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운영지원과에서도 매년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문서를 통해 할인율, 캐시백 이용방법 등을 공지하고 있다.

* 캐시백 : 구매자가 사용한 금액 중 일정 비율을 적립하여 현금으로 전환하거나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는 서비스

조달청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5조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9조 3항에 따라 공공부문 차량용 유류(휘발유, 경유) 등에 대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시중 주유소 판매단가의 약 6.84%(현장할인 5.74% + 포인트 적립 1.1%) 할인된 가격으로 협약한 주유소에서 주유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 운영하는 관용차량의 운행을 위해서는 필요시 마다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즉시 결제한 후 수요에 맞도록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예보국 국가태풍센터는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구매 시 청사근처에 주유소가 없다는 이유로 10회에 걸쳐 6,383ℓ, 8,589,210원의 유류를 선결제후 구매 후 필요에 따라 주유하여 사용하였다.

국립기상과학원에서도 3회에 걸쳐 443,940원의 유류를 선결제 구매후 사용하였다.

또한, 국가태풍센터는 2016년 6월까지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발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 기관운영경비 카드로 유류를 구매하였으며, 2016년 6월 30일 카드를 발급받은 후에도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기관 운영경비 카드로 유류를 구매한 사례가 1건 있었다.

[표 1] 관용차량 유류 구입 현황 (2015. ~ 2017. 4)

소속	지출결의일자	주유량	주유금액(원)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사용 여부	비고
국가태풍센터	2015.04.25	735ℓ	1,000,000	기관운영카드	
	2015. 07.	709ℓ	1,000,000	기관운영카드	
	2015.10.	388ℓ	500,000	기관운영카드	
	2015.12.09	794ℓ	1,000,000	기관운영카드	
	2015.12.09	671ℓ	1,000,000	기관운영카드	
	2016.07.15	618ℓ	800,00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주유카드발급 (2016.06.30.)
	2016.10.17	769ℓ	1,000,000	기관운영카드	
	2016.12.21	373ℓ	500,00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2016.12.21	596ℓ	789,21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2017.03.27	730ℓ	1,000,00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계	6,383ℓ	8,589,210		
국립기상과학원	2015.12.24	161ℓ	188,51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주유가능 최대 용량(승합) : 80ℓ
	2016.11.25	101ℓ	126,30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
	2016.12.19	100ℓ	129,130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	"
	계	362ℓ	443,940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에서도 관용차량 운영을 위해 유류를 구매 하면서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6월 감사일 현재까지 총 23회에 걸쳐 7,652,070원의 유류를 선결제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표 2] 관용차량 유류 구입 현황

지급결의 일자	주유금액(원)	지급결의 일자	주유금액(원)
2015.02.10	500,000	2015.09.10	300,000
2015.03.25	500,000	2015.11.10	400,000
2015.05.11	700,000	2015.12.10	300,000
2015.06.10	500,000	2015.12.28	322,570
2015.07.27	300,000	2015년 총계	3,822,570
2016.02.11	190,000	2016.09.26	300,000
2016.02.25	300,000	2016.10.10	100,000
2016.03.10	300,000	2016.11.10	300,000
2016.04.25	300,000	2016.12.12	300,000
2016.06.10	300,000	2016.12.26	389,500
2016.08.10	300,000	2016년 총계	3,079,500
2017.03.27	200,000	2017.06.12	300,000
2017.05.25	250,000	2017년 총계	750,000

또한 강원지방기상청은 2015년 1월 1일부터 2017년 3월 21일까지 총 656회에 걸쳐 관용차량 운영을 위한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가 아닌 일반 기관운영경비 카드를 이용하여 구매 후 결제하였다.

[표 3] 연도별 유류 구매 현황 (강원지방기상청)

구분	'15.01월~11월	'15.12월~'16.12월	2017년 (1월1일~3월21일)	계
횟수(회)	176	408	72	656
금액(원)	10,497,669	22,586,015	4,200,894	37,284,578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할인가능 금액(원)	418,857	1,296,437	241,131	1,956,425
유류구매카드 사용 시 캐시백(원)	115,474	248,446	46,210	310,130

특히,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할 경우 할인된 가격(시중주유소 판매단가의 약 5.74%)으로 주유할 수 있으며, 포인트 적립(1.1%) 혜택 등 위와 같이 총 1,956,425원(캐쉬백적립 : 310,130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사용하지 않아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4. 관계기관 의견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및 국립기상과학원, 항공기상청 무안공항기상대에서는 감사결과를 수용하고 관용차량 유류구매 시 현장 결제를 통해 사용량에 맞도록 적정하게 사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고, 강원지방기상청 기획운영과에서는 유류구매 사용을 위해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관용차량 운행에 필요한 유류구매 시 공공조달 유류구매카드를 이용하여 필요한 사용량에 따라 현장에서 구매 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통 보					
번 호	7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제 목 : 기관장 및 부서장 통신비 지급에 관한 사항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관서운영경비를 집행하면서 기본경비 내 공공요금 및 제세(210-02목) 예산으로 기관장 및 부서장의 방재기상업무, 홍보 등 기상업무를 위한 통신요금을 지원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공공요금 및 제세 집행 기준에는 부서장이나 기관장의 통신비 지원에 관한 사항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또한 연도별 세출예산서에도 통신비 지원에 관한 세부 예산이 배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위직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업무용 스마트폰 도입 방안’에 따라 2014년 4월부터 기상청장, 국장 등(7개 보직)에 대해 보안 스마트폰 지급 후 통신요금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보안휴대폰 요금 이외의 개인용 휴대폰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어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없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본청 및 소속기관 각 부서에서는 지급근거가 없는데도 기관장 및 부서장의 공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었다.					
그러나 개인명의 휴대폰임에도 통화요금뿐만 아니라 업무와 무관한 부가서비스 사용료와 단말기 할부금까지 지원하다가, 2016년부터는 단말기할부금 등을 제외한 통화요금을 지급하고 있었다.					

한편, 본 실지감사 후 2017년 8월부터 본청 및 기상지청에서는 휴대폰 통신비 지원을 중단했으나 지방기상청, 국립기상과학원 등에서는 기관장에게만 통신비를 지원하고 있다.

[표 1] 2017년 8월 이후 기관장, 부서장 휴대폰 통신비 지급 현황

기관별 통신비 지급 현황	본청	수도권 기상청	부산지방 기상청	대구기상 지청	광주지방 기상청	전주기상 지청	강원지방 기상청
(17.8 현재)	-	청장	청장	-	청장	-	청장
	대전지방 기상청	청주기상 지청	제주지방 기상청	항공기상청	국립기상 과학원	기상위성 센터	기상레이더센터
	청장	-	청장	-	원장	-	-

4. 관계기관 의견

위건 관련 수감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운영지원과 등과 협의 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방재기상업무, 기상홍보 업무 등을 위한 휴대폰 통신요금 지원과 관련하여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할 경우 관련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 법령에 따라 지원 대상 및 범위 등 근거를 명확히 정하여 지급하도록 개선방안 마련·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통 보

번호	8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	-----	-----------	------	---------------

제 목 :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기관의 업무추진 및 연구업무 등 수행과 관련하여 세미나, 워크숍, 업무회의 등에 필요한 회의비 등 업무추진비를 관서운영경비 중 시험연구비(210-13목)와 업무추진비(240목)으로 집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240목)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도록 되어있다.

그리고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표 1] 업무추진비(240목)의 집행 가능한 경비

업무추진비 세목	가능한 집행 목적	비고
사업추진비(240-10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 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외빈초청 경비, 해외출장지원 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등 	-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관 간 업무협의 및 기관 내·외 간담회 등 각 관서의 기본적인 운영 및 체육대회, 중무식 등 기관의 공식 업무 추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경비 	-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예보국

예보국의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시험연구비(210-13목) 또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회의비 등의 집행 131건에 대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증빙서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건이 22건, 증빙서류에 결과보고 자료가 없는 것이 12건이었다.

[표 2] 주요 사업 추진 관련 회의비 집행 현황(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내부		기상청 참여		외부 전문가 참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39	9,695,700	33	8,213,700	4	1,137,000	2	345,000
2016	68	27,128,730	19	6,612,500	21	9,663,900	28	11,302,330
2017	24	9,379,130	3	537,900	11	7,429,380	10	1,699,050
계	131	46,203,560	55	15,364,100	36	18,230,280	40	13,346,380

[표 3] 주요사업 회의비 집행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여부(2015. 1. 1. ~ 2017. 5. 30.)

구분	2015	2016	2017	계
계획 미수립	14	8	0	22
결과 미보고	3	9	0	12
계	17	17	0	34

또한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과 관련해서도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총 179건의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약 135건(75%)가 예보국 내부회의였으며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이 참여한 회의 등은 44건(25%)이다.

[표 4]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예보국 내부		기상청 내부		외부기관 참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90	17,450,980	70	13,064,210	5	1,305,300	15	3,081,470
2016	60	14,371,445	43	9,144,65	11	2,135,800	6	3,090,950
2017	29	4,353,295	22	3,214,650	1	300,000	6	838,645
계	179	36,175,720	135	17,193,325	17	3,741,100	27	7,011,065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증빙서류에 기재와 관련하여 179건 중 45건(25%)만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으로 증빙서류를 관리했고 나머지 134건(75%)는 집행 후 확인조서로 증빙서류를 갈음했다.

[표 5]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증빙 자료 현황 (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		확인조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90	17,450,980	19	5,169,970	71	12,281,010
2016	60	14,371,445	21	6,096,870	39	8,274,575
2017	29	4,353,295	5	627,995	24	3,725,300
계	179	36,175,720	45	11,894,835	134	24,280,885

나. 기상레이더센터

기상레이더센터의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시험연구비(210-13목) 또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회의비 등의 집행 124건에 대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증빙서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건이 57건이었다.

[표 6] 주요사업 추진 관련 회의비 집행 현황(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내부		기상청 참여		외부 전문가 참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47	17,152,225	13	2,817,000	17	7,483,500	17	6,377,725
2016	51	15,283,000	24	6,147,000	11	3,257,500	16	5,608,877
2017	26	5,888,000	13	1,761,000	7	1,866,000	6	2,261,000

계	124	38,323,225	50	10,725,000	35	12,607,000	39	14,247,602
---	-----	------------	----	------------	----	------------	----	------------

[표 7] 회의비 집행관련 계획 및 결과보고 여부(2015. 1. 1. ~ 2017. 5. 30.)

총 지급건수	계획 및 결과보고 미시행			
	계	2015	2016	2017
124	57	17	23	17

또한 관서업무추진비(240-02목)과 관련해서도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총 73건의 집행현황을 조사한 결과 51건(70%)가 기상레이더센터 내부회의였으며 다른 부서나 외부기관이 참여한 회의 등은 22건(30%)이다.

[표 8] 업무추진비 집행 현황(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기상레이더센터		기상청 내부		외부기관 참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31	4,120,000	19	2,113,000	7	1,159,000	5	848,000
2016	28	3,913,371	22	3,342,371	6	571,000	0	0
2017	14	1,740,000	10	1,182,000	3	440,000	1	118,000
계	73	9,773,371	51	6,637,371	16	2,170,000	6	966,000

그리고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른 증빙서류에 기재와 관련하여 73건 중 2건(약 3%)만 사용계획 및 결과보고 등으로 증빙서류를 관리했고, 나머지 71건(97%)는 집행 후 확인조서로 증빙서류를 갈음했다.

[표 9] 업무추진비 집행관련 증빙 자료 현황 (2015. 1. 1~2017. 5. 30)

(단위 : 원)

연도	계		사용 계획 및 결과 보고		확인조서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31	4,120,000	2	203,000	29	3,817,000
2016	28	3,913,000	-	-	28	3,913,370
2017	14	1,740,000	-	-	14	1,740,000
계	73	9,773,000	2	203,000	71	9,470,370

다. 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에서는 국가태풍센터 운영 및 기상업무지원기술개발 연구업무를 추진하면서 세미나, 워크숍, 국제행사, 연구회의 등의 추진과 관련하여 업무추진비 성격의 회의비(오찬, 만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관서운영경비로 집행하고 있다.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국가태풍센터의 2015. 1. 1.부터 2017. 5. 30.까지 시험연구비(210-13목) 또는 사업추진비(240-01목)로 회의비 등의 집행 81건에 대한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 증빙서류 관리 실태를 조사한 결과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집행한 38건이고, 회의결과 보고를 하지 않거나, 증빙서류로 편철하지 않은 회의(행사)가 45건 이었다.

[표 10] 연구개발 및 주요사업 추진관련 회의비 집행 현황

(단위 : 원)

연도	계		내부		외부(기상청)		외부 전문가 참여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15	31	15,274,000	26	13,404,000	0	0	5	1,870,000
2016	38	18,566,900	25	13,094,900	3	742,000	10	4,730,000
2017. 5	12	4,443,000	4	1,711,000	3	1,116,000	5	1,616,000
계	81	38,283,900	55	28,209,900	6	1,858,000	20	8,216,000

[표 11] 회의비 집행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관련

(단위 : 원)

구분	건수	금액
계획 미수립	38	18,472,500
결과보고 누락	45	19,851,000

특히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업무추진비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그런데 국가태풍센터에서 2015. 1. 1. ~ 2017. 5. 30.까지 회의비로 50만 원 이상 집행한 4건에 대해서 참석자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누락하였다.

[표 12] 회의비 집행관련 계획 수립 및 결과 보고 관련

(단위 : 원)

건명	사용일자	사용금액	비고
2015년 태풍 단장기 예측기술 워크숍 (만찬)	2015. 4. 1.	890,000	참석자 서명자료 없음
2014년 영향태풍 베스트트랙 실무자회의 회의비	2015. 3. 20.	500,000	참석자 서명자료 없음
2016년 세계기상의 날 자체행사 (만찬)	2016. 3. 23.	1,010,000	참석자 서명자료 없음
2017년 기획운영업무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 행사 진행 경비	2016.11. 26.	800,400	참석자 서명자료 없음

4. 관계기관 의견

관련기관에서는 감사지적 내용을 수용하면서 앞으로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업무추진비 등 회의비 집행과 관련하여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명확히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하시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시기 바랍니다.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 부서

통 보

번호	9	소 관	본청 및 소속기관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부서
----	---	-----	-----------	------	---------------

제 목 : 시험연구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국가재정법」 및 기획재정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등의 규정에 따라 소관 일반회계의 시험연구비(210-13목) 세출예산을 집행하였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국가재정법」 제45조 및 예산집행지침 V.‘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등에 따르면 예산의 집행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이외의 용도에는 사용할 수 없고, 시험연구비는 시험연구에 직접 관련된 경비에 한하여 집행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46조에 따르면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전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행사나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일반수용비(210-01), 여비(220-01), 임차료(210-07), 업무추진비(240-02) 등으로 목적에 따라 편성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가. 기상서비스진흥국

기상서비스진흥국에서는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공무원 정보지

식인대회 중앙대회 참가자 특별교육’, ‘정보통신 중장기 발전과제 발굴 워크숍’ 등과 관련하여 회의비, 여비 등으로 집행하였다.

[표 1]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집행내역 (2015. 1. 1. ~ 2017. 4. 30.)

(단위 : 원)

지출일자	금액	집행내역	적정비목	비고
2015-11-18	20,000	2015년공감워크숍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현재 관측기반국 소관
2015-11-18	20,000	2015년5급승진후보자역량평가사전교육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1-18	20,000	2015년5급승진후보자역량평가사전교육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1-18	20,000	2015년5급승진후보자역량평가사전교육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1-18	305,800	2015년공무원정보지식인대회중앙대회참가자특별교육(1차)(정보)	210-01(일반수용비)	
2015-12-07	100,720	2015년하반기정보화담당관협의회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2-07	52,720	과워크숍참소실사(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2-10	1,150,000	정보통신중장기발전과제발굴워크숍숙박비(정보)	220-01(국내여비)	
2015-12-15	920,000	정보통신중장기발전과제발굴워크숍참석(정보)	220-01(국내여비)	
2016-07-11	160,000	측후기의역사자료연계활용전문가초청세미나실시에따른오찬소요경비(데이터)	240-01(업무추진비)	
2016-07-11	200,000	기상과학역사기후자료해석과활용을위한전문가세미나개최에따른만찬소요경비(데이터)	240-01(업무추진비)	
2016-07-25	300,000	국립기상박물관관립협업추진을위한전문가초청세미나개최소요경비(데이터)	240-01(업무추진비)	

나. 국가태풍센터

국가태풍센터에서는 ‘국가태풍센터운영’ 및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 연구(R&D)사업을 추진을 위해 시험연구비(210-13목)을 집행하면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창조정책과정 교육’ 참석을 위한 여비 ‘청원경찰 안보현장 답사’ 여비, ‘세계보안엑스포 참가’ 여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였다.

[표 2]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집행내역 (2015. 1. 1. ~ 2017. 4. 30.)

지급일자	금액	건명	적정비목	비고
2015-2-16	636,200	제14기 창조정책과정 교육 참석	220-01(국내여비)	
2015-2-16	232,800	재정자율평가 및 국 성과담당자 회의 참석	220-01(국내여비)	
2015-10-15	30,000	차량 수리 의뢰 및 관사점검 여비 지급	220-01(국내여비)	
2015-11-18	150,200	국내 선진 보안시설 답사	220-01(국내여비)	
2015-12-1	20,000	관사시설 점검	220-01(국내여비)	
2015-12-1	79,980	2015회계연도 일선관서 결산교육 참석	220-01(국내여비)	
2015-12-1	40,000	관사 시설물 점검 및 물품 구매	220-01(국내여비)	
2015-12-8	160,000	감골농가지원 봉사활동 여비	220-01(국내여비)	
2015-12-8	40,000	관사시설공사 관리 감독	220-01(국내여비)	
2015-12-21	40,000	서귀포시 안문협 정기총회 참석	220-01(국내여비)	
2015-12-21	514,200	청원경찰 안보현장 답사	220-01(국내여비)	
2015-12-24	927,900	청원경찰 안보현장 답사	220-01(국내여비)	
2015-12-24	20,000	명예이장 위촉장 수여식 참석	220-01(국내여비)	
2016-1-17	137,200	2015년 하반기 근무성적평가 회의 참석 여비 요청	220-01(국내여비)	
2016-1-27	26,670	과학원 숙소 건설지 답사 여비 지급 요청	220-01(국내여비)	
2016-1-27	40,000	관사 일반물품 정기재물조사 지원 여비 지급 요청	220-01(국내여비)	
2016-3-22	50,000	차량 수리 및 관사 시설물 점검	220-01(국내여비)	
2016-3-22	50,000	청관사 조경과 시설물 점검	220-01(국내여비)	
2016-4-21	20,000	관용차량 타이어 교체 여비	220-01(국내여비)	
2016-4-21	150,000	물품 구매와 관사 시설물 관리 등 여비 지급	220-01(국내여비)	
2016-4-21	40,000	식목행사 준비, 물품구입	220-01(국내여비)	
2016-4-21	10,000	관사시설물 점검	220-01(국내여비)	
2016-4-21	20,000	제주지역 유관기관 업무협의	220-01(국내여비)	
2015-5-31	33,320	공용차량(스타렉스) 정기점검, 창사 사무용품 구입 여비	220-01(국내여비)	
2016-6-23	40,000	관사 수리 및 수리업체 견적 방문	220-01(국내여비)	
2016-7-12	70,000	기관총회의회 이임인사 및 기관총 수행 여비 등	220-01(국내여비)	
2016-7-12	50,000	관사수리, 소방설비시설 설치 및 관용차 정비 의뢰	220-01(국내여비)	
2016-7-12	20,000	신임 센터장님 명패 및 제반물품 수령	220-01(국내여비)	
2016-7-28	20,000	관사 수리 및 시설물 점검	220-01(국내여비)	
2016-7-28	20,000	에너지절약 지도점검반 수행	220-01(국내여비)	
2016-8-19	20,000	관사 현관문 수리 및 정화조 청소 감독	220-01(국내여비)	

2016-8-19	60,000	관사 제초작업, 인터넷망 교체 공사 감독	220-01(국내여비)	
2016-8-19	40,000	남녀 휴게실 비품 구매 및 시장조사	220-01(국내여비)	
2016-9-29	40,000	청사소모품 구입	220-01(국내여비)	
2016-11-4	381,200	안보현장 탐방 및 문화체험에 따른 차량 렌트비	220-01(국내여비)	
2016-11-4	20,000	관사수리 확인 및 은행업무	220-01(국내여비)	
2016-11-4	1,397,800	안보현장 탐방 및 문화체험(청원경찰)	220-01(국내여비)	
2016-11-4	10,000	센터 관용차량 주유비 및 가스요금 결제	220-01(국내여비)	
2016-11-16	10,000	기관 소모품 구매	220-01(국내여비)	
2016-11-16	1,362,700	소규모 채용자 실무능력 향상과정 교육	220-01(국내여비)	
2016-11-16	525,500	안보현장 탐방 및 문화체험 여비	220-01(국내여비)	
2016-11-16	20,000	관사 외부가로등, 복도센서등, 화장실 환풍기 수리 감독	220-01(국내여비)	
2016-11-23	10,000	관용차량(쏘나타) 타이어 점검	220-01(국내여비)	
2016-11-23	30,000	관사수리 견적 및 물품구입	220-01(국내여비)	
2016-12-5	40,000	관사 공용구역 청소 및 도배 감독	220-01(국내여비)	
2016-12-13	10,000	관사 시설물 관리 및 간담회 장소 사전 답사	220-01(국내여비)	
2016-12-13	30,000	관용차량 통절기 운행 준비	220-01(국내여비)	
2017-3-7	60,000	관용차량 관리와 사무용품 구매	220-01(국내여비)	
2017-3-22	1,839,180	2017 세계보안엑스포 참가	220-01(국내여비)	
2017-4-12	110,000	2017년 식목행사 참가 및 물품구매	220-01(국내여비)	

다.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링센터에서는 ‘예보기술 지원 및 활용연구’를 추진을 위한 시험연구비(210-13목)을 집행하면서 연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직원경조사 조문’ 여비 및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훈련비’ 등의 목적으로 집행하였다.

[표 3]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비의 집행내역 (2015. 1. 1. ~ 2017. 4. 30.)

지급일자	금액	건명	적정비목	비고
2016-2-22	728,900	신규 기간제근로자 조직적응교육 참여/2.15. (기상업무지원_개발)	220-01(국내여비)	
2016-2-22	134,560	과학원 소속직원 근무평정 회의 참석 /1.6.~1.7. (기상업무지원_응용)	220-01(국내여비)	
2016-4-11	46,660	식목일날 행사 참여/4.5. (기상업무지원/개발)	220-01(국내여비)	
2016-4-20	149,930	부서원 경조사(결혼식) 참석/4.9. (기상업무 지원/응용)	220-01(국내여비)	
2016-7-3	432,000	직원 부친상으로 인한 조문 참석/5.22. (기상업무지원/응용과)	220-01(국내여비)	
2016-10-6	305,860	직원 경조사 참여(10.1/응용과 2명)	220-01(국내여비)	
2016-11-8	391,700	공무원 음악대전 참가(10.28-29/응용과 2명)	220-01(국내여비)	
2017-2-17	1,109,000	제135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훈련비 지급	220-01(국내여비)	

그 결과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과 다르게 시험연구비 예산을 집행하여 예산질서를 어지럽혔다.

4. 관계기관 의견

관련기관에서는 감사지적 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련 앞으로는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맞게 시험연구와 직접 관련된 경비에만 집행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앞으로 예산편성 목적과 다르게 시험연구비 예산을 연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일반수용비, 여비 등으로 지급해야 할 경비로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시험연구비 집행 업무 철저를 위한 교육 실시 **(통보)**

[관련부서] 본청 및 소속기관 전 부서

통 보

번 호	10	소 관	수치모델링센터	관련부서	수치모델개발과
-----	----	-----	---------	------	---------

제 목 : 여비 집행 증빙자료 관리 부적정

1. 업무 개요

본청 및 소속기관에서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 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공무원 출장관련 운임 등을 정산하여 지급하고 있다.

2. 관계법령 및 판단기준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규정에 따르면, 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 운임 대신에 기준에 따라 연료비 및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또한 기상청 내부기준(운영지원과-1421, 2008. 7. 23.)에 따라 사전에 자가용 이용에 대한 내부결재를 득해 여비 지급요청 시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3. 감사결과 확인된 문제

그런데, 수치모델링센터는 소속 직원에 대한 여비를 지급함에 있어 [표]과 같이 근무지의 출장 시, 사전에 내부결재를 득하지 않고 임의로 자가용 차량을 이용하여 출장한 자에게 연료비, 통행료 등 총 555,560원(5회) 여비를 집행하였다.

[표 1] 국내 출장 시 자가용승용차 이용 운임 지급 현황

(단위 : 원)

출장목적	출장기간	출장지	출장자	출장비	비고
평창 국외 관측전문가 관측현장답사 및 워크숍 참석	2016. 3. 22.~ 3. 25	강릉시 외 4	백○○	187,390	사전 내부결재 문서 없음
관측자료기반 수치모델 물리과정 개선 국제워크숍 참석	2016. 9. 6.	강릉시	김○○	110,130	
한수에 생산자료 홈페이지 구축 협의 및 현업업무 보고	2016. 9. 6.	청주시	박○○	77,260	
연찬회 일정협의 및 사전 답사	2016..12. 1.	춘천시	박○○	59,090	
2016년 수치모델연구부 연찬회	2016.12.5.~ 12. 6.	홍천군	장○○	121,690	
계				555,560	

4. 관계기관 의견

위 관련 기관에서는 감사기간 중 감사결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수용하면서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5. 조치할 사항

본청 각 국·실 장 및 소속기관의 장은 앞으로 근무지의 출장 시, 자가용을 이용한 경우 사전 내부결재를 득하였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 연료비, 통행료 등이 적정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 여비 집행 업무 철저 **(통보)**

[관련부서] 수치모델링센터 수치모델개발과